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
----------	-----

2023. 4. 24.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11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진경 의원 )

-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
- 마. 침수방지시설 관련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안 별표)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제3조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관내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풍수해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1,471건, ‘19년 3건, ‘20년 150건, ‘21년 0건, ‘22년(9월 30일 기준) 20,108건이며
-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은 ‘18년 사망자 4명(재산피해 26억 23백만원), ‘19년 사망자 1명(재산피해 1억 8백만원), ‘20년 사망자 1명(재산피해 2억 76백만원), ‘21년(침수피해 無), ‘22년 사망자 8명(재산피해 683억 5천만원)으로 올해 건수 및 피해 규모가 급증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침수 피해 현황  
( ‘22. 9. 30. 기준)

연 도	사망자(명)	피해건수	피해액(백만원)	복구액(백만원)	비 고
합계	14	21,732	71,357	97,883	
2022	8	20,108	68,350	94,692	
2021	0	0	0	0	침수 피해 없음
2020	1	150	276	347	
2019	1	3	108	75	
2018	4	1,471	2,623	2,769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1)(책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구청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22. 9. 14일 보도자료<sup>3)</sup>를 통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1)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삭제 <2017. 10. 24.>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8. (생략)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거. (생략)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3)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2022. 9. 14. 보도자료)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중략)~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 2 조례안 주요 조문별 내용

###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풍수해”,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먼저, “풍수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sup>4)</sup>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sup>5)</sup>에서 명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차수판(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외에도 수중펌프(양수기)와 집수정(물저장고) 등의 시설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2) 책무 (안 제3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맥을 같이한다 할 것임

## 3)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제3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치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5조제4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제5항은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제5조의 지원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4) 비용 지원 및 지원 대상 (안 제6조 및 제8조)

**안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안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5) 홍보 등 (안 제9조)

**안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권장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여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6) 협력체계 구축·운영 (안 제9조)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여겨지므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질 의 : 좋은 조례안에 대해 감사하나 지원 대상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소규모 상가도 지원기 가능하다고 명시가 필요함
- 답 변 : 조례안 지원 대상에 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 한정이 아니라 상가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함. 전체적으로 상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명시 없이도 소규모 상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조례안 명시도 가능함
- 질 의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음
- 답 변 :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보다 신청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함

## 7. 토론 요지 : “없음”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2호

발의일자 : 2023.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회

### 1. 수정이유

- 지원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상가까지로 확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의 각호 근거 법령 및 조항을 현행화
-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함

### 2. 수정내용

-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권리주체에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권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 구청장이 지원하는 순서에 대한 각 호의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침수방지시설 지원 한도 금액을 수정하고, 설치 개소당 지원 한도로 명시함(별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주택의 출입구에”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 제8조제2항 “지원액의 범위”는 “지원액의 한도”로 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지원 대상) ① -----<u>주택의</u>- ----- ② ----- 1. -----<u>제1조의2제2호</u> - 「건축물의 <u>설비</u> 등에 관한 규 칙」 ----- 2. ----- 3. -----<u>제2조제2호</u></p> <p>제8조(지원 기준) ① ----- ② ----- ----- <u>범위</u>는 -----.</p> <p>&lt;신 설&gt;</p>	<p>제6조(지원 대상) ① ----- <u>주택</u> <u>및 소규모 상가</u> ----- ② ----- 1. -----<u>제2조제2호</u> - 「건축물의 <u>설비기준</u> 등에 관한 규칙」 ----- 2. (원안과 같음) 3. -----<u>제2조제1항제2호</u></p> <p>제8조(지원 기준) ① (원안과 같음) ② ----- ----- <u>한도</u>는 -----.</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u>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수정안 별표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2. 침수방지시설 지원 금액		[별표] 2. 침수방지시설 지원 <u>한도</u> 금액	
구분	단독주택	구분	단독주택
지원 금액	2,000,000원 이하	지원 금액	<u>설치 개소 당 2,000,000원</u> 이하
구분	공동주택	구분	공동주택
지원 금액	<u>10,000,000원</u> 이하	지원 금액	<u>설치 개소 당 5,000,000원</u>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 1. 지급 방법

- 주거시설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급

### 2. 침수방지시설 지원 **한도** 금액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금액	설치 개소 당 2,000,000원 이하	설치 개소 당 5,000,000원 이하
지원범위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
----------	-----

발의연월일: 2023. 4. 7.

발의자: 복진경·김광삼·김영권·  
이성수·황영각·안지연·  
이도희·이향숙·김진경·  
박다미·강을석 의원  
(이상11인)

## 1. 제안이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

마. 침수방지시설 관련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3. 지급 방법

- 주거시설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급

4. 침수방지시설 지원 금액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금액	2,000,000원 이하	10,000,000원 이하
지원범위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